

- ③ 물류터미널사업협회는 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- ④ 물류터미널사업협회는 법인으로 한다.
- ⑤ 물류터미널사업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[<개정 2020. 6. 9.>](#)
- ⑥ 물류터미널사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0조(물류터미널 개발의 지원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터미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물류터미널의 건설
2. 물류터미널 위치의 변경
3. 물류터미널의 규모 · 구조 및 설비의 확충 또는 개선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자가 설치한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도로 · 철도 · 용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 [<신설 2012. 6. 1.>](#)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 또는 제2항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· 도지사에게 부지의 확보 및 도시 · 군계획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[<개정 2008. 2. 29., 2011. 4. 14., 2012. 6. 1., 2013. 3. 23.>](#)

제20조의2(물류터미널의 활성화 지원)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는 건설 · 운영 중인 물류터미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물류터미널에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제조시설 및 그 부대시설과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에 따른 점포등의 설치를 포함하여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 변경인가를 할 수 있다. 다만, 일반물류터미널은 화물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품목의 제조 또는 판매를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한정한다. [<개정 2015. 6. 22.>](#)

1. 삭제 <2015. 6. 22.>
2. 삭제 <2015. 6. 22.>
3. 삭제 <2015. 6. 22.>

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가 공사시행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[<신설 2015. 6. 22.>](#)

1. 제조시설 및 그 부대시설과 점포등의 설치 면적 전체의 합계가 물류터미널 전체 부지면적의 4분의 1 이하일 것
2. 주변의 상권 및 산업단지 수요와의 상호관계를 고려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물류터미널이 소재하는 시 · 도지사(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)와 협의하고, 일반물류터미널사업에 대하여 시 · 도지사는 해당 물류터미널이 소재하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과 협의할 것
3.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,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은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것

[본조신설 2014. 1. 28.]

[제목개정 2015. 6. 22.]

제21조(인 · 허가등의 의제)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가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인가 · 허가 · 승인 또는 결정 등(이하 "인 · 허가등"이라 한다)에 관하여 인 ·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 ·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,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 ·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. [<개정 2007. 12. 27., 2008. 2. 29., 2008. 3. 21., 2009. 6. 9., 2010. 2. 4., 2010. 4. 15., 2010. 5. 31., 2011. 4. 14., 2013. 3. 23., 2014. 1. 14., 2016. 12. 27., 2017. 3. 21., 2020. 1. 29., 2020. 6. 9., 2022. 12. 27., 2024. 1. 9.>](#)